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 위반자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·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.

1. **공고명칭:** [구특별]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(11.18.발송분)
2. **공시송달 대상:** 붙임 문서 참조
3. **공고 기간:** 2019. 12. 4. ~ 12. 17.(14일간)
4. **유의사항**
 - 가. 사전통지서가 미송달되어 의견제출기한(납부기한)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.
 - 나.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(압류 등)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다.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5%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5. **기타사항**

기타 사항은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(☎02-2286-604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9. 12. 3.

성 동 구 청 장

